

자료배포일 2011.07.19	보도협조일 배포시	총매수 3
배 포 부 서 홍보팀 032-741-2112,3	담 당 부 서 선진화추진단 032-741-2785	
400-7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번길 /www.airport.kr		

경향신문 7월 18일자

'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 한·미FTA 발효 땀 제조 우려'
제하의 기사에 대하여

□ 보도 내용 및 해명 ['11.7.18, 경향신문]

◆ 인천공항 지분매각 이후 공항지분을 보유한 미국인이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으로 소송제기와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

* 美 투자자에 대해 가격, 서비스, 투자규제 등을 통한 손실발생시

- 인천공항의 가격제한으로 인한 기대수익에 미달한 투자자의 ISD(투자자 국 가제조제도) 활용, 한국정부에 제조 및 중재신청

1. 인천공항의 현행 공항시설사용료는 정부의 저운임 정책에 따라 항공사와 사용료 협상 후 정부에 신고하는 형태로 간접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

○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, 동 공항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의 가격 규제조치를 강화할 계획임

○ 향후 지분매각시 상장예비심사청구, IR(투자설명회)과정을 통해 인천공항의 가격규제 등에 대한 사전 공시가 되고, 이에 근거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

2. 현재 지분매각된 국내 공기업 중 한전,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보유 지분중 일부를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나, 이와는 무관하게 서민경제 물가정책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하에 가격을 통제

○ 동 기관은 현재까지 투자자들의 소송제기 사례가 없고,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재의 가격규제 정책에 대한 미 투자자의 소송제기는 어려운 것으로 자체적 분석

* '11. 7월 현재 외국인 지분보유비율 : 한전(26%), 가스공사(7%)



Incheon Airport

인천국제공항공사

3. 따라서 인천공항 가격규제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기존의 가격 및 배당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美 투자자의 가격규제 손실 등을 이유로 제소할 명분이 없음
- 설령 제소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인천공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인 투자자가 주주인 모든 국내기업에 적용되므로 인천공항만을 문제시 할 수 없는 사안임